

하도급 CONSULTING 안내

하도급 거래 관련 규제 강화

-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 조사 및 제재 강화(매년 서면 실태 조사 실시)
- 고액의 과징금 부과 및 민·형사상 처벌(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, 기술유용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)
- 하도급 관련 법집행 강화(기술자료 보존 3년→7년으로 변경) / 정액과징금 2배 확대(5억 → 10억)
- 법인과 담당자 동시 처벌(양벌규정)



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인한 경영상 위협 요인 상존

구매, 개발 관련 업무 표준화 필요 및 기업내의 하도급 관련 시스템 개선



하도급 CONSULTING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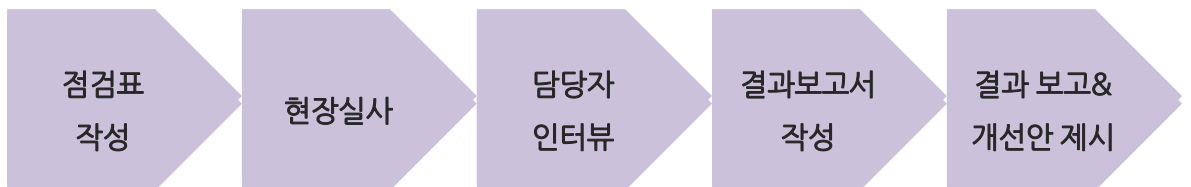
- 하도급 거래분야 업무 Process 점검
- 하도급 내부 구매 관련 제규정 및 지침 점검 및 표준화 제안
-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검토
- 하도급 프로세스 개선 결과 보고서 제출
- 하도급 교육(총 2회), 인터뷰시 개별 교육

☞ 비공개 원칙 및 문서보안 준수
컨설팅은 비공개로 진행하며,
문서보안 절차를 준수

☞ 컨설팅 관련 자료의 취급 원칙
컨설팅 종료시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



컨설팅 절차



점검 인력

하도급분쟁조정 출신 간사 및 조사관, 외부 전문가와 공동 참여



하도급 CONSULTING 안내



컨설팅 주요 일정(2개월)

일정	내용
1~2주차	▪ 하도급 현황 파악, 점검표 작성 및 교육 1회 실시(2시간)
3~4주차	▪ 하도급 관련 점검표 결과를 근거로 계약 단계별 개선 사항 검토 ▪ 제규정 및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분석 - 제규정 및 절차서, 구매 및 생산 관련 시스템 검토 - 하도급계약서 및 관련 문건 분석
5주차	▪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점검 (회사 내부 일정에 따라 협의 후 진행)
6~7주차	▪ 분석자료 검증 및 보고서 작성
8주차	▪ 보고서 납품 및 최종 결과 발표(PT)



준비사항

- 하도급 거래 점검표 작성(인터뷰 담당자)
-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서, 하도급 관련 내부 규정
(계약규정, 품질관리규정, 검사 규정, 반품 규정, 대금 지급 규정 등)
- 회의실 등 인터뷰 및 교육을 위한 장소(2~3인 정도)



컨설팅 비용

회사의 매출액을 기초로 협의 후 결정(VAT 별도, 회원사 10% 할인)



컨설팅 실적

대동공업/주성/SFA/현대위아/KT / 팬택 / 신세계건설 / 세방전지 /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/ 신흥정밀 / 경동/ 나비엔 / 현대다이모스 / 이노션 / 유한김벌리 / 풀무원 및 계열사 / 현대엘리베이터 / 삼양사 / 삼양엔텍 / 도루코 / 두산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(상생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10여개 이상의 협력업체 점검 실시)



하도급 CONSULTING 안내



컨설팅 예시

■ 구매 부문

적용 범위 표준 서면 도입 (4건)

□ 계약서(3건)

서면 미교부, 불완전 교부, 부당 특약

구분	검토	이슈
표준계약서	신규	협정서 부당 특약
금형계약서	변경	불완전 교부, 미교부
구매계약서	변경	공사/일반 계약서 분류

1. 표준계약서

가. 기존 :

- (1) 타입 : '08년 공정위 고시 자동차업종
- (2) 이슈 : **협정서 부당 특약 가능성** **有**
- (3) 별점 감경 : 계약서 일부 수정은 감경 불가

나. 검토 :

- (1) 타입 : 공정위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
- (2) 이슈 : 협정서 로펌 검토를 통한 부당 특약 해소
계약서와 협정서 별도 계약체결
- (3) 별점 감경 : **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별점(2점) 감경** **可**

2. 금형(치구)계약서

서면 불완전 교부, 미교부

- 가. 기존 : 개발 건수, 가격결정 **多** → 지연, 미교부 발생
- 나. 검토 : **가격결정 지연 해소(가단가 계약 후 정단가 계약)**
개발 건수 증가 시 서면 발급 수 증가
타사 (금형 개발 외주화 → 하도급 적용 **無**)

3. 구매계약서

가. 기존 : 단일 계약서 사용

나. 검토 : 시설공사 / 대기업용 / 일반 계약서로 세분화

4. 하도급대금 합의서

부당감액

- 가. 표준 서면 도입 : 적용시점 및 합의자 변경, 간소화
- 나. 프로세스 개정
실무자 합의 → 본부장 결재 → 시스템 결재 → 합의서 보관
※ 서면 불완전 교부 해소
※ 부당감액 예방 (하이되 견정서 전수)

■ 기타 부문

적용 범위 프로세스 개선 (4건)

1. 표준 기술자료 요구 지침

기술자료 제공요구, 유용 금지

가. 당사 기술자료 접수현황

QC공정도, 작업표준서, 3D 데이터, 매뉴얼 등 → 해당

나. 추진 내용

- (1) 부서별 기술자료 수취 내역 접수
- (2) 기술자료 해당사항 분석
- (3) 기술자료 심사고시 확인(법무 검토) - 검토 중
- (4) 기술자료 지침 내부 고시

※ 기술자료 유용이 4대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 시행 중

2. 목표원가, TCS 운영 기준

부당감액 / 경영정보 요구 금지

가. 목표원가 : 목표원가 기준으로 합당한 절차 없이

가격 결정시 부당감액

- 목표원가는 내부 관리 지표로 운영

나. TCS 운영 : 협력업체 조사는 경영정보 요구금지 범위반

- 한국물가정보 데이터 활용

3. 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

하도급 대금 지급

가. 대금지급 (제조위탁)

- (1) 중소기업 : 60일 이내 현금화
- (2) 보호대상 중견기업 : 60일 이내 현금화
- (3) 대기업 / 중견기업 : 계약 조건
※ 단, 발주자(공공기관) 현금지급 시 현금 지급

나. 지연이자 수수료 지급

- (1) 지급수수료 변경(기존 7%)
- 당사 약정은행 분기별 평균 차입 이자율로 적용
(현재 4% ~ 4.5% 수준)
- (2) 협력업체 변경내용 안내 필요

다. 납품대금지급 약정서 내용 수정

- 카드결제 방식에 대한 문구 추가



담당 : 윤광희 실장(02-310-3311), 배종균 과장(02-310-3326)



공정경쟁연합회
FAIR COMPETITION FEDERATION